

# 회의록

## [외교통상위원회] 상임위원회 4

안건명: 입법청원안 #1 & #2 - 김지호 의원

회의 일시: 2024년 09월 14일

회의 참석자 (가나다순): 강다영 멘토, 김단아 의원, 김은설 의원, 김지호 의원, 이지안 의원, 전서현 의원, 최원상 의원

### [수정 제안]

- 김은설 의원: 입법청원안 #2 수정안  
Q. 수정안에서 관계의 기관들이 실종 \_\_\_ 확인하나/ 개인정보 침해하는 것 아닐지... [출입국관리법](#) (제2장 제3조 6항)

김지호 의원:

A. 위급한 상황은 맞기에, 국가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boundatry 허항되지 않을까...

- 김지호 의원 to 강다영 멘토:  
Q. 입법청원안 #1 - 제14조에 관한 피드백:

강다영 멘토:

A.

- 1항 수정안 -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없을 경우 고려한 사항 good, but 애매/모호
- Q to 김지호 의원: 행정적 지원?  
A from 김지호 의원: 비행기 자리를 못 구하는 경우 (응급상황) — 국가가 개입,  
→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(미성년자 - lack of money)  
→ IF 새벽에 위급상황 발생 → 미성년자가 어디있는지 파악 불가능 상황 서,  
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국내 이송이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...

Follow up)

김지호 의원: 치료를 받고 싶은데 거부: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... 어쩔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면?

강다영 멘토: 부작용 우려 ... 위급상황 서 영사관이 파악한다는 것 불가능

**\*\*법률안 만들기 전: 이유에 관한 구체적 근거 필요 — 특정한 케이스 하나만으로 불가능**

- 객관적 다수의 의향
- 객관적 근거 자료 (보고서, 논문 등 공식적 자료 필요)
- 외교통상위원회: 지금껏 사례 하나로 다뤄짐... 타당한 근거 필요

이지안 의원: 유엔 공식 발표 보고서 등 참고 가능?

강다영 멘토:

- 정치 및 행정적 사회 고려
- A 방안 proposed by 유엔 협약 등 국제기구 (보편적 상황)
- BUT 헌법 상에서 위협의 소지가 있다 → B라는 대체안 마련 가능

강다영 멘토:

- **\*\*보도자료 추가 → 완성도 있는 법률안**
- 수정안 (입법청원안 #1 수정? #2 수정? 정해야함)

김지호 의원: 제14조 1항 추가 부분 중심적 focus 맞추기

강다영 멘토: 제14조 1항 조사 필요 (사각지대 문제 커버 good)

- 미성년 관련 영사조력) 조사 가능한지..
- 조항 추가 추천

김지호 의원:

- 불법체류자일시, 국내에 있는 것 거부 → 구체적 내용 추가

강다영 멘토:

- 수정안 하나씩 작성
- 근거 자료 찾기

김지호 의원:

- 입법청원안 #1 - 제14조 - 수정안 - 1항  
“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·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.  
만약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, 가족 또는 연고자를 식별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관들이 이들을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한다.” - 관련 법률 있는지 사례 조사 (2024년 09월 15일 상임위회의 #5까지)

---

끝.